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고양신일초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에 따라 학교장허가체험학습 실시(3일 등)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7일 등) 이내에 제출한다. 이에 따른 신청서와 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는 학교에서 5년간 보관한다.

또한, 같은 지침에 따라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험학습의 목적, 유형, 기간,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학년도 총 3건에 대한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가 누락되고, 2021학년도 총 14건에 대한 신청서 또는 결과보고서 누락 및 나이스 기록 누락 등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증빙서류 관리 부적정 현황

학년도	학년반	성명	신청 일자	일수	목적 (사유)	담임 교사	부적정 내용
2020	1-△	○○○	2020.11.13.	1	가정학습	○○○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누락
2020	2-△	○○○	2020.10.30~11.06.	6	가정학습	○○○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누락
2020	2-△	○○○	2020.12.08.	1	가정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2021	2-△	○○○	2021.09.23.	1	체험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2021	2-△	○○○	2021.11.23.~11.24.	2	체험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2021	2-△	○○○	2021.03.29.	1	체험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2021	2-△	○○○	2021.12.29.~12.31.	3	체험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2021	2-△	○○○	2021.12.30.~12.31.	2	체험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2021	2-△	○○○	2021.09.02.	1	체험학습	○○○	미신청으로 나이스 오기 (담임 학급일지 확인)
2021	2-△	○○○	2021.12.20.~12.29.	8	가정학습	○○○	신청서 누락
2021	2-△	○○○	2021.12.29.~12.31.	3	가정학습	○○○	신청서 누락
2021	2-△	○○○	2021.07.05.	1	체험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2021	2-△	○○○	2021.07.12.	1	체험학습	○○○	신청서 누락
2021	2-△	○○○	2021.08.30., 09.01.	2	체험학습	○○○	나이스 기록 누락 (체험학습 서류: 08.30.~ 09.01. 나이스: 08.31.)
2021	3-△	○○○	2021.11.26.	1	체험학습	○○○	나이스 정정 필요 (나이스 인후통 기재, 체험학습 서류 존재)
2021	4-△	○○○	2021.12.13.~12.17.	5	가정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2021	6-△	○○○	2021.07.02.	1	가정학습	○○○	결과보고서 누락

**【조치할 사항】**

- ① 고양신일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0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출결상황 입력 시 기타 결석 사유 부적정 및 특기사항 미입력

관계기관 고양신일초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내용 등]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훈령제 393호, 제8조[출결상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기타결석 사유로는 첫째,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둘째,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셋째,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해야 한다.

그런데도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는 [표1]과 같이 기타결석 사유가 부적정하였으며,

[표1] 기타결석 사유 부적정 현황

학년도	학년 반	번호	성명	일수	특기사항 사유 부적정	내부결재 여부
2020	3-△	△△	○○○	3	체험학습 미제출	×
2020	3-△	△△	○○○	1	개학인지 모름	×
2020	6-△	△△	○○○	1	코로나 감염 우려 (○)	×

또한 [표2]와 같이 2020학년도부터 기타결석이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사유를 미입력한 사례가 있었다.

[표2] 기타결석 특기사항 미입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오류

학년도	학년 반	번호	성명	일수	특기사항 미입력	내부결재 여부
2021	4-△	△△	○○○	2	특기사항 미입력	×

## **【조치할 사항】**

- ① 고양신일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7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고양신일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2021, 2022) 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방과후, 주말, 방학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강사수당 지급 시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일지, 출석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양신일초등학교 교사 ○○○ 외 2명은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표]와 같이 수업을 실시하였다고 작성한 출석부상 날짜에 출장, 조퇴 등의 사유로 해당일에 실제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들과 협의하여 날짜를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이를 위한 변경계획서나 변경한 날짜에 수업이 진행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연번	직	성명	학년/반	지도일지 상 수업일시	당일 복무상황	환수금액 (단위: 원)	비고
1	교사	○○○	1-5	2021. 11. 10. 13:10~13:50	병조퇴 2021. 11. 10. 13:20~16:40	40,000	
2	교사	○○○	3-2	2021. 11. 10. 12:50~13:30	외출 2021 11. 10. 13:00~15:30	120,000	
				2021. 12. 8. 12:30~13:50 (2시간)	조퇴 2021 12. 8. 12:55~16:40		
3	교사	○○○	5-4	2022. 5. 13. 15:30~16:15	조퇴 2022. 5. 13. 14:40~16:40	40,000	
합계액						200,000	

## **【조치할 사항】**

- ① 고양신일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채용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고양신일초등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규칙」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는 <표> 와 같이 교육공무직원 대체직을 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현황

연번	직종	성명	채용사유	근로시작일	근로종료일	결격사유 조회 여부		비고
						성범죄	아동학대	
1	조리실무사	○○○	조리실무사 병가 대체	2021. 3. 11.	2021. 3. 19.	미조회	미조회	
2	조리실무사	○○○	조리실무사 병가 대체	2021. 3. 26.	2021. 3. 26.	미조회	미조회	
3	조리실무사	○○○	조리실무사 특별휴가 대체	2021. 4. 19.	2021. 4. 23.	미조회	미조회	
4	조리실무사	○○○	조리실무사 특별휴가 대체	2021. 10. 25.	2021. 10. 25.	미조회	미조회	
5	조리실무사	○○○	조리실무사 공가 대체	2021. 11. 24.	2021. 11. 24.	미조회	미조회	
6	조리실무사	○○○	조리실무사 특별휴가 대체	2021. 12. 16.	2021. 12. 30.	미조회	미조회	
7	조리실무사	○○○	조리실무사 특별휴가 대체	2022. 2. 23.	2022. 2. 28.	미조회	미조회	

## **【조치할 사항】**

- ① 고양신일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